

Focus

포커스

필요조건면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가야 할 길

확실한 역전성수까지 협상 유보 경제·사회적 손실 피할 방안 찾아야

무역협정의 5가지 필요조건, 심각한 결격사유로 채워져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 큰 산업, 당사국 입장 존중해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간의 공방이 장기간에 걸쳐 거듭되고 있다. 진심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찬성론도 그 반대론도 금물이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는 이에 필요한 첨단지식을 정보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자유무역협정이 성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필요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별로 한·칠레 양국이 처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본 협정이 지향해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성공 위한 필요조건?

세계화 시대를 살면서 자유무역협정 자

체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조류를 역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합리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능률과 정의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경우에만 유용하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이 성공하려면 최소한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조건을 원만한 수준으로 충족시켜야만 한다. 우선적으로 필요조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충분조건을 검토해 볼 가치가 없다.

일찍이 바이너(J. Viner)는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이란 제목으로 국제비교생산비율을 근거로 자유무역의 장점을 역설했다. 특히 후진국이 경제발전을 하려면 농업부

문(1차 산업)에 특화하여 농산물(1차 산물)을 선진공업국에 수출하고 선진국으로부터 공신품(2차 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가 주장한 후진국의 '농업특화론'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후진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만은 자국의 땅에서 자국의 자원으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농업을 제조업과 동일시하여 자유무역론을 펼친 그의 명제는 냉엄한 국제 경제 현실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유무역에 관한 해박한 논리와 그가 실패한 후진국 '농업특화론'에서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인 필요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를 합친 순무역창출 효과가 큰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을 해야한다. 둘째, 두 나라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제규모가 커야한다. 셋째, 두 나라간의 교통거리가 가까울 경우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다국적 기업이 협상당사국에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농업과 같은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 즉 식량안보 및 다원적 기능이 큰 산업은 그 가치를 고려하여 자

유무역협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조건에서 본

양국 입장

김 중 실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필요조건별로 한·칠레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가치로 평가한 순무역창출 효과가 커야 한다. 이것은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이 조건을 검토하면 매우 정교한 첨단분석모형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필자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각각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한바 있으며 매스컴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단언한다면 한·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가져다 줄 순무역 창출효과는 없으며, 그로 인해 국민경제적 실익(GDP, 국민후생, 무역수지, 물가 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민후생과 GDP가 각각 0.05%, 0.1%수준으로 극히 미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자유무역협정 1차적 목표인 무역수지는 오히려 악화되며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한·칠레 양국의 경제적 관계는 상호실익이 있을 만큼 양국경제가 상호보완적이고 경제규모가 큰 국가인가? 경제규

Focus

포커스

모가 클수록 상호 시장확대를 통해 무역창출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앞서서 꼭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필수조건의 하나이다. 칠레인구는 우리나라의 32%, 1인당 GDP는 우리의 56% 수준으로 총구매력이 우리의 18%이다. 또한 주요수출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칠레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여력이 크지 않다. 더욱이 칠레는 단일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2010년이면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또한 이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많은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FTA를 통해 특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이러한 면에서 양국경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절대적인 시장규모도 매우 왜소하다.

셋째,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이 되려면 두 나라간 교통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한·칠레간의 경우는 어떠한가? 동질·동일한 양의 무역을 하는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운반비와 보험료가 적으므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관한 한 두 나라는 지구의 반대

편에 있으므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다.

넷째, 다국적 기업이 협상 당사국에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국적기업과 같은 거대자본과 그에 수반된 기술이 개입될 경우에는 양국간의 협정이라기보다 다국적기업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변질된 협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칠레에는 농업부문에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돌(Dole)과 유니

푸루티(Unifruitti)를 포함한 여타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여 칠레는 플랜테이션 농업의 천국이라 할 만하며 그들을 주축으로 생산과 유통 및 수출이 주도되고 있다. 이들은 세계첨단 기술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현지 직영농장을 통해 생산을 하고 세계적 유통망을 이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가치보다 비시장경제가치가 큰 농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그 가치를 양 당사국은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양국간의 관계는 어떤가? 이 부분은 양국간에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여 협상이 중단될 만큼 나쁜 조건을 갖고 있다. 칠레측이 관심을 갖는 농산물은 품목분류방법 HS 10단위 기준으로 469개에 달했으며, 포도·사과·배 등 과일류,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낙농품, 포도주, 주류 등의 가공식품



필요조건면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가야할 길

이 포함되어 있다.

칠레측은 2000년 6월 양허수정안을 우리측에 제시하였는데 그 양허안은 협정발효 즉시 관세철폐품목 40%, 5년이내 철폐품목 27%, 10년이내 철폐품목 32%, 특별취급품목 1%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는 그들이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WTO 농산물협상 이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차이로 인해 칠레 통상당국은 지난 5월 28일 외교전문형식으로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언급하면서 "WTO협상이 종결될 때 까지 협상을 연기하자"는 제의를 해왔다. 이처럼 농업과 같이 비시장가치가 중요시되는 부문을 무시하고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제통상협약의 관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조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조건은 최악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가야할 길

한·칠레 경제의 실상은 FTA체결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상의 5가지 필요조건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원만하게 충족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단기적인 국민경제 목표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

경제발전 비전을 어둡게 할 가능성성이 높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칠레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 매우 부적합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식을 지혜로 응용할 줄 아는 합리적인 위정자가 있다면 그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유도해갈 길은 다음 두 가지 길 중에서 선택이 있을 따름이다.

그 첫 번째 길은 경제적 실익면에서 보다 확실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칠레간 협상을 유보하는 것이며 두 번째 길은 조기 협상체결이 체제적 합리성 면에서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임을 전제로 할 때, 적극적 협상보다는 한·칠레 양국 모두가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손실극소화 협상」방안을 찾는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문을 포함시키려면 국내농업대책과 더불어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무역장벽 제거의 효과가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않고 양국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양국의 농업을 상호보완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별도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농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없이 한·칠레 협상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국민경제적 효율, 공정, 안정 모두를 해치는 또 하나의 무모한 국제협정을 탄생시키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정치권의 사회·정치적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농악정보**